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953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,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[별지1]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07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(2812)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: ①㈜가우리안(김동준) ②코오롱글로벌(주)(김영범) ③씨제이
대한통운(주)(민영학) ④(주)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
(오승교, 박윤희)

나. 전화번호: ①031-900-1600 ②02-3677-6345 ③02-2017-1000 ④02-3498-2600

2. 명칭: 표준화된 이음부를 가지는 띠장 및 버팀보와 힌지형 우각모듈 및 다축식 길이조절모듈을 이용한 모듈형 흙막이버팀보공법(GR-S)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> 토질 및 기초 > 흙·물막이공

<기술의 요지>

신청기술은 표준화된 이음부를 가지는 띠장 및 버팀보와 힌지형 우각모듈 및 다축식 길이조절모듈을 적용하여 시공성 및 안정성을 향상한 모듈형 흙막이버팀보공법이다. 모듈 및 표준화된 부재는 공장에서 선조립 후 출고되며, 부재 간의 연결은 볼트체결 방식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다. 부재의 모듈화를 통해 현장 가공 작업을 제거하여 현장시공성을 향상시키고, 부재의 단면성능을 향상함으로써 내부가시설 지보재의 투입량이 감소되어 전체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다.

<범위>

단면 성능을 향상시킨 교형 띠장 및 직사각형 버팀보와, 띠장 우각부 연결용 힌지형 우각모듈 및 버팀보 길이조절과 설치·해체 시 하중 조절에 활용되는 다축식 길이조절모듈을 포함하며, 등간격 볼트구멍이 형성된 결합플레이트를 주요 부재에 일체화하여 부재 간 표준 연결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, 공장 제작·선조립 후 현장에서는 볼트체결 중심으로 조립되는 모듈형 흙막이 가시설 공법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(전화: 031-389-657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‘나’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